

행사 후원 협약서

본 행사 후원 협약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주관자’라 한다)이 주관하는 2015 한글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이하 ‘행사’라 한다)을 네이버주식회사(이하 ‘네이버㈜’라 한다)가 후원하고, ‘행사’와 관련한 제휴 마케팅을 진행함에 있어, ‘네이버㈜’와 ‘주관자’의 역할분담 및 기타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협약내용

행사명	2015 한글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행사주관자	한국콘텐츠진흥원	행사기간	2015년 06월 30일~2015년 10월 08일
협약기간	2015년 06월 30일~2015년 12월 31일		
네이버㈜ 후원 방식	상금 지급	총 액 일천이백만원(₩12,000,000/VAT포함) (네이버상 수상자 3팀에게 분할 지급. 800만원 1팀, 200만원 2팀)	
	컨텐츠검색	가. 제공형태: <u>콘텐츠 검색</u> 나. 제공기간: 2015년 07월 01일~2015년 11월 08일	
	배너 제공	가. 제공형태: PC DA 나. 제공기간: ‘행사’ 접수 시작 2주 전부터 당선작 발표일 까지 3회에 걸쳐 노출 (공고 시 / 접수 시 / 발표 시)	
	기타	당선작 소개 페이지 제작 등 홍보협조	
주관자 제공사항	제공 컨텐츠	당선작 관련 정보, 이미지, 관련 컨텐츠 등	
	Powered by Naver 표기	노출매체: 공모전 페이지, 보도자료, 홍보물	
특약사항	공식 후원사 명기	명기방식: ‘네이버㈜’가 제공하는 가이드에 따름	
첨부			

기타 본 협약의 상세한 조건에 대하여는 다음의 ‘행사후원 일반조건’에 명시된다. ‘네이버㈜’와 ‘주관자’는 ‘주요 협약내용’ 및 ‘행사후원 일반조건’에 동의하며,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06월 30일

‘네이버㈜’
네이버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네이버 그린팩토리

대표이사

김 상 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원장 송 성 각 (인)



행사후원 일반조건

제1조 (용어의 정의)

- ‘컨텐츠’란 본 협약 하에 ‘주관자’가 제공하는 ‘행사’와 관련된 정보, 이미지, 컨텐츠 등을 의미하며, ‘주요협약내용’의 제공 컨텐츠를 포함한다.
- ‘서비스’란 PC 및 모바일 등 접근기기의 종류를 불문하고, ‘네이버(주)’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이하 ‘네이버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네이버(주)’의 이용자에게 ‘컨텐츠’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컨텐츠 검색’이란 ‘네이버 등’의 검색서비스로서 행사명에 대한 검색결과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를 말한다.

제2조 (기간)

본 협약의 기간은 ‘주요협약내용’에 명시되며, 각 세부사항에 따른 일정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3조 (협약 당사자의 역할)

- ‘주관자’는 ‘행사’와 관련된 ‘컨텐츠’를 제공하고, ‘컨텐츠’가 갱신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상호 합의한 방법으로 ‘네이버(주)’에게 제공한다.
- ‘네이버(주)’는 제공받은 ‘컨텐츠’를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컨텐츠’를 ‘서비스’함에 있어 ‘서비스’의 화면 구성, 정보검색 단계, 메뉴의 재배치 등을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주관자’는 ‘행사’의 홍보 및 광고와 관련한 모든 매체와 인쇄물 등의 자료에 ‘네이버(주)’를 공식 후원사로 명시한다.
- ‘네이버(주)’는 ‘행사’ 홍보를 위해 ‘주요협약내용’에 명시된 배너 제공 기간 동안 ‘네이버 메인 및 서브 페이지’의 DA 영역 내 배너를 제공한다. 단, 제공 횟수 및 방식은 ‘네이버(주)’의 마케팅 리소스에 따라 ‘네이버(주)’가 결정한다.
- ‘네이버(주)’는 ‘주요협약내용’에 명시된 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당선작 발표 15일 이내 수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 ‘네이버(주)’는 ‘서비스’ 내 ‘행사’에 대한 정보 전달 및 제휴 마케팅을 위한 온라인 프로모션 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다. 단, 페이지 제작 및 노출 여부는 ‘네이버(주)’가 결정한다.
- ‘네이버(주)’와 ‘주관자’는 협의한 업무를 위한 담당자 1인을 선정한다.
- ‘네이버(주)’와 ‘주관자’는 본 조에 규정된 상호 의무를 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다.

제4조 (컨텐츠의 이용범위)

- ‘네이버(주)’는 제공받은 ‘컨텐츠’를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기간에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네이버(주)’는 제공받은 ‘컨텐츠’를 수정, 편집할 수 있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으며, ‘컨텐츠’ 및 그 편집물, 2차적 저작물 등을 ‘주관자’의 성명 표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 ‘네이버(주)’는 제공받은 ‘컨텐츠’를 협약기간 및 협약의 종료 후 1개월 동안 ‘주관자’와 협의 후 ‘행사’의 오프라인 캠페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본 협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기 진행 중인 캠페인은 해당 캠페인의 종료일까지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비밀유지)

- ‘네이버(주)’와 ‘주관자’는 본 협약의 내용 및 협약산출물과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하였거나 향후 취득할 상대방의 사업상 정보, 노하우 또는 영업상 비밀 등 (이하 ‘영업비밀’이라 함)을 대



외비로 관리하고,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그 종업원, 대리인, 상담역 등으로 하여금 누설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영업비밀’을 포함하는 모든 자료들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또는 수령자가 더 이상 ‘영업비밀’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회수 또는 폐기되어야 한다.
3. 모든 ‘영업비밀’은 제공자의 독점적 소유이며, ‘영업비밀’의 제공은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수령자에게 허여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4. 본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언론 등에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을 사전에 당사자들이 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5. 본 조의 의무는 협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3년간 유효하게 적용되며, 본 조의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이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보호)

1. 양 당사자는 상대방 고객의 개인정보를 본 협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이용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를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2. 양 당사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 의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다한다.
3. 양 당사자는 개인정보 제공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임직원에게만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또는 취급을 허용하고, 취급자에 대한 적정한 통제와 교육을 실시한다.
4. 양 당사자는 개인정보의 제공 목적의 달성, 본 협약의 종료, 상대방의 요청,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만료, 사업의 폐지 등의 경우 자체 없이 개인정보를 폐기·반환(종이에 출력된 경우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고, 전자적 파일로 저장된 경우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반환)하고, 상대방에게 ‘개인정보 폐기확인서’를 제출한다.
5. 양 당사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중 일부를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관하되, 기간 경과 시 자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폐기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개인정보 폐기확인서를 제출한다.
6. 양 당사자(당사자의 임직원 및 당사자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 포함)가 개인정보를 폐기·반환 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이용하거나, 이를 본 협약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고객·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행위자와 연대하여 신속히 일체를 배상한다.



제7조 (손해배상)

본 협약기간 동안 각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즉시 상대방을 면책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이를 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제8조 (지적재산권 및 면책)

1. ‘주관자’는 본 협약에 따라 ‘네이버(주)’에게 제공한 ‘컨텐츠’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컨텐츠’에 대한 특허 및 저작권을 포함한 기타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컨텐츠’의 제공이 제 3자의 특허 또는 저작권을 포함한 기타의 적법한 권리와 관련 법률을 침해하거나 위반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2. ‘주관자’가 ‘컨텐츠’에 대하여 국내 및 국외의 제3자로부터 특허 또는 저작권을 포함한 제3자의 권리(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는, ‘네이버(주)’는 ‘주관자’의 ‘컨텐츠’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3. 전항과 관련하여 ‘네이버(주)’가 국내 및 국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소추 등을 당한 경우에는, ‘주관자’는 이로부터 ‘네이버(주)’를 방어하고, 이로 인한 총 비용(손해배상 포함)을 부담한다.





제9조 (불가항력)

불가항력으로 인해 협약 당사자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간주되면 협약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행사’를 연기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금지)

본 협약에 근거한 일체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위탁하거나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조 (협약의 해지)

1. ‘네이버(주)’와 ‘주관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네이버(주)’와 ‘주관자’는 상대방이 본 협약을 위반하거나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주)’와 ‘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네이버(주)’의 사전 동의 없이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될 경우
 - 나. ‘주관자’의 ‘컨텐츠’ 제공이 신속, 정확하게 개선되지 않는 경우
 - 다. 상대방이 파산, 지불불능, 해산, 청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으로 정상적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 라. 상대방이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4. 본 조에 따른 해지는 이미 발생한 권리 관계 및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협약 해지 시의 처리)

불가항력을 포함하여 ‘네이버(주)’의 귀책사유 없이 ‘행사’가 취소되거나 본 협약이 해지 되는 경우, ‘주관자’는 기 지급받은 상금 전액을 ‘네이버(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협약의 변경)

‘네이버(주)’와 ‘주관자’는 상호 서면 합의를 통해 본 협약내용을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14조 (협약의 해석 및 관할)

1. 본 협약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본 협약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정한 바에 따라 해결한다.

